

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1997년 12월 23일

제출자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민태승

1. 수정이유

-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작전담당 간사의 임무중 그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 수정골자

- 작전담당 간사의 임무중 그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“작전분야”를 “작전지역의”로 하고 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회의”로 함.(안 제6조 제2항)

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2항 1호 가목중 “작전분야”를 “작전지역의”로 하고
“실무위원회”를 “실무회의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	수정이유
제6조(협의회간사) ①생략 ②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작전담당간사 가. <u>작전분야</u> 주무간사로서 <u>실무위원회</u> 운영 나.~바. (생략) 2.~4. (생략)	제6조(협의회간사) ①원안과 같음 ② 1. 가. <u>작전지역의</u> <u>실무회의</u> 나.~바. (원안과 같음) 2.~4. (원안과 같음)	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함.